

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』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대상투자신탁:

1) 블랙록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(H)

2. 공시사유: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

1) 종류 C-p, S-p, S-i 수익증권 신설

2) 감독원 자산배분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른 관련 문구 삭제

3) 세법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 변경

3. 시 행 일: 2015.01.23.

4. 변경 내용:

가. 집합투자규약

변경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종류 C-p, S-p, S-i 수익증권 신설	③(본문 생략) (신설)	③(본문 현행과 같음) <u>종류 C-p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</u> <u>종류 S-p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</u> <u>종류 S-i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,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</u>
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종류 C-p, S-p, S-i 수익증권 신설	①(본문 생략) (신설)	①(본문 생략) <u>종류 C-p 수익증권</u> <u>종류 S-p 수익증권</u> <u>종류 S-i 수익증권</u>
제 39 조(보수)	종류 C-p, S-p, S-i 수익증권 신설	③(본문 생략) (신설)	③ (본문 현행과 같음) <u>종류 C-p 수익증권</u>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5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6.0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4</u>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5</u> <u>종류 S-p 수익증권</u>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5</u>

BLACKROCK

			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8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4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5</p> <p>종류 S-i 수익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2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4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5</p>
제 41 조(환매수수료)	종류 C-p, S-p, S-i 수익증권 신설	②(본문 생략) (신설)	<p>②(본문 현행과 같음)</p> <p>종류 C-p 수익증권 : 없음</p> <p>종류 S-p 수익증권 : 없음</p> <p>종류 S-i 수익증권</p> <p>가. 3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 <p>나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p>
제 52 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	종류 C-p, S-p 수익증권 신설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(C-p 클래스 및 S-p 클래스의 경우에는 "연금지축계좌설정약관")"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)

나. 투자설명서

변경항목	정정사유	변경전	변경후
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및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종류 C-p, S-p, S-i 수익증권 신설	(신설)	<p>종류 C-p, S-p, S-i</p> <p>(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: AZ155, AZ156, AZ157)</p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	종류 C-p, S-p, S-i 수익증권 신설	(신설)	<p>종류 C-p</p> <p>(가입자격 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지축계좌의 가입자)</p> <p>(선취판매수수료 : 없음)</p> <p>(환매수수료 : 없음)</p> <p>(보수 정보)</p> <p>집합투자업자 : 0.55%</p> <p>판매회사 : 0.60%</p> <p>신탁업자 : 0.04%</p> <p>일반사무관리회사 : 0.025%</p> <p>종류 S-p</p> <p>(가입자격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,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</p>

			<p>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)</p> <p>(선취판매수수료 : 없음) (환매수수료 : 없음) (보수 정보) 집합투자업자 : 0.55% 판매회사 : 0.18% 신탁업자 : 0.04% 일반사무관리회사 : 0.025%</p> <p>종류 S-i</p> <p>(가입자격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 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,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자)</p> <p>(선취판매수수료 : 없음) (환매수수료 : 3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30 일 이상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30%) (보수 정보) 집합투자업자 : 0.55% 판매회사 : 0.012% 신탁업자 : 0.04% 일반사무관리회사 : 0.025%</p>
<p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</p>	<p>자산배분 가이드라인 폐지로 인하여 관련 문구 삭제</p>	<p>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채권을 각각 최소 25%에서 최대 75%까지 투자할 수 있는 자산배분형 투자신탁입니다.</p> <p>이러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,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상기 자산배분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단, 투자전략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"BGF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펀드"가 해당 자산배분범위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, 다른 주식 또는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투자할 예정입니다. 이를 통해서 이 투자신탁은 항상 동 목표자산배분범위를 준수할 예정입니다.</p> <p>피투자펀드는 상기 목표자산배분범위를 준수하기 위해 해당 투자제한 비중 등을 내부 전산 시스템에 계량적으로 입력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모니터링 합니다. 만일 투자비중이 투자제한 수준에 근접하게 되면, 전산시스템 상 자동적으로 경고 시그널이 나타나며, 해당 사실이 운용역과 관련부서 담당자들에게 동시에 전달됩니다.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운용역은 사전에 투자비중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, 관련 조항의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/p>	<p><u>이 투자신탁은 자산배분과 관련하여 유연한 접근방법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자산배분형 투자신탁입니다.</u>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	<p>종류 C-p, S-p, S-i 수익증권 신설</p>	<p>(신설)</p>	<p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)와 동일</p>

BLACKROCK
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종류 C-p, S-p 수익증권 신설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	(신설)	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상세 내용 추가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과세 -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	세법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 변경	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% 의 세율로 원천징수(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)됩니다.	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.4% (<u>법인세 14%, 법인지방소득세 1.4%</u>)의 세율로 원천징수(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)됩니다.
[별첨 2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]	재간접투자기구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내용 추가 보완	(신설)	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관련 내용

다. 간이투자설명서

변경항목	정정사유	변경전	변경후
제 1 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		
2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자산배분 가이드라인 폐지로 인하여 관련 문구 삭제	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채권을 각각 최소 25%에서 최대 75%까지 투자할 수 있는 자산배분형 투자신탁입니다. 이러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,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상기 자산배분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단, 투자전략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"BGF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펀드"가 해당 자산배분범위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, 다른 주식 또는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투자할 예정입니다. 이를 통해서 이 투자신탁은 항상 동 목표자산배분범위를 준수할 예정입니다.	<u>이 투자신탁은 자산배분과 관련하여 유연한 접근방법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자산배분형 투자신탁입니다.</u>
제 2 부 매입 및 환매관련 정보			
1.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종류 C-p, S-p, S-i 수익증권 신설	(신설)	<p>종류 C-p (가입자격 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) (선취판매수수료 : 없음) (환매수수료 : 없음) (보수 정보) 집합투자업자 : 0.55% 판매회사 : 0.60% 신탁업자 : 0.04% 일반사무관리회사 : 0.025%</p> <p>종류 S-p (가입자격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,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</p>

BLACKROCK

			<p>입자 <u>(선취판매수수료 : 없음)</u> <u>(환매수수료 : 없음)</u> (보수 정보) <u>집합투자업자 : 0.55%</u> <u>판매회사 : 0.18%</u> <u>신탁업자 : 0.04%</u> <u>일반사무관리회사 : 0.025%</u></p> <p>종류 S-i <u>(가입자격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 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,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자)</u> <u>(선취판매수수료 : 없음)</u> <u>(환매수수료 :</u> <u>3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u> <u>30 일 이상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30%)</u> (보수 정보) <u>집합투자업자 : 0.55%</u> <u>판매회사 : 0.012%</u> <u>신탁업자 : 0.04%</u> <u>일반사무관리회사 : 0.025%</u></p>
2. 과세에 관한 사항	종류 C-p, S-p 수익증권 신설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	(신설)	<u>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상세 내용 추가</u>
2. 과세에 관한 사항	세법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 변경	일반법인 14%	<u>일반법인 15.4%(법인지방소득세 포함)</u>

5. 기 타: 변경 후 집합투자계약 및 투자설명서는 집합투자계약 및 투자설명서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